

2024년 하반기

지역사랑상품권

부정유통

일제단속



단속기간 2024. 11. 18.(월) ~ 12. 20.(금)

단속대상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

단속사항

상품권 사용자

- 지인을 동원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사용
- 타인이 구매한 상품권을 수수료 지급 후 매입 등

상품권 가맹점

-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·환전하는 행위(일명 '깡')
-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·환전하는 행위
-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,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
- 상품권 사용 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
- 상품권 사용 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
- 상품권 권면금액 80%(5만원권은 60% 이상) 사용 시 잔액 환급 여부

※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행·재정적 처분이 있을 수 있음

